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어르신복지과

www.seongbuk.go.kr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천원)

연번	부서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사유
1	어르신복지과	2022.1.26	43,500	1. 노인복지시설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과 관련한 시설 운영비 지원 필요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2022.2.25	180,139	1. 구립경로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 6필지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되어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비 사용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각목 명세서(예비비 사용)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소 요 예 산 (천원)	산 출 내 역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어르신복지과	활기찬 노후보장	노인복지 시설운영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43,500	1)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43,500천원
	활기찬 노후보장	노인복지 시설운영	경로당시설 관리	배상금등	배상금등	180,139	1)국유재산 변상금 180,139천원

붙임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 현황 1부.
2.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추진 현황 1부. 끝.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과 관련한 시설 운영비 지원 필요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지원 대상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46	18 (※입소정원 10명 이상)	5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23 (※ 이용정원 5명 이상)

○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1,000천원 × 41개소 = 41,000천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00천원 × 5개소 = 2,500천원

추진현황

- '22.1.27. 코로나 19 관련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집행현황

- 예산액 : 43,500천원
- 예산과목 : 활기찬노후보장,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지급시설	집행액	잔액	비고
46	43,500	0	- 재원 : 구비 100% 집행율 : 100%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및 구립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건물로 어르신복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미납시 연10%의 연체이자가 계속 가산됨에 따라 신속집행 필요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국유재산 현황** (단위 : m²)

명칭	소재지	지목	점유면적	토지소유	건물소유
한성경로당	삼선동1가 308-12	임야	200.00	기획재정부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안암동5가 104-148	대	152.00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안암동5가 104-181	대	7.00	기획재정부	-
	안암동5가 104-182	대	10.00	기획재정부	-
	안암동5가 104-37	대	185.00	기획재정부	성북구
청수경로당	정릉동 966-24	대	112.00	기획재정부	-

○ 변상금 부과 내역 및 기간

- 변상금(삼선동1가 308-12 등 6필지) : 108,138,530원
- 부과기간 : '19.07.~'20.11.(1회차) / '20.12.~'21.04.(2회차)

□ 추진현황

- '17.11.07.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17.7.1. ~ '19.6.30.(2년) / 무상사용
- '20.11.09.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21.02.18.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 '21.12.22. 판결선고(기각) ⇒ 변상금 부과는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
- '22.02.17. 소송 종결에 따른 국가채권 체납액 납부최고 및 지자체 명의재산 압류예정 통지
- '22.03.02. 변상금 납부완료

□ 예비비 집행현황

- 예 산 액 : 180,139천원
- 예산과목 : 활기찬노후보장, 노인복지시설운영, 경로당시설관리, 배상금등(305-01)
-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회 차	변상금	이 자	총 액	납부일	비고
1회차('19.07.~'20.11.)	127,205,840	14,567,680	141,773,520	2022.3.2.	
2회차('20.12.~'21.04.)	35,568,280	2,796,730	38,365,010	2022.3.2.	
합계	162,774,120	17,364,410	180,138,530		